

의안번호	2209515
의 퇴 인	윤준병의원
회 답 일	2025.5.14.
추계번호	25B1999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기본서비스 지표 및 기준 설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실적 평가 등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7억 6,300만원, 2031년 19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간 91억 4,100만원(연평균 18억 2,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 (안 제6조)	115	-	-	-	-	115	23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8조)	186	-	-	-	-	186	37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보장 및 공공교통소외 지역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9조)	1,462	1,462	1,462	1,462	1,462	7,310	1,462
시행계획의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 (안 제10조)	-	-	510	510	510	1,530	306
합 계	1,763	1,462	1,972	1,972	1,972	9,141	1,828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이하 “기본서비스”라 한다)를 설계·관리하고, 이를 제공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서비스를 측정·설계·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이 경우 사전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고시된 기본서비스 지표 및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제2항)	의무규정
		기본서비스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제3항) 1. 지역별 교통서비스 제공 및 운영 실태 2. 농어촌의 공공교통수단 및 공공교통시설 현황과 기본서비스 제공 실태 3. 대도시권의 공공교통수단 및 공공교통시설 현황과 기본서비스 제공 실태 4. 그 밖에 기본서비스 지표·기준 설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교통소외지역에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교통소외지역 내 공공교통수단 및 공공교통시설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다만, 공공교통소외지역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이 법에 따른 공공교통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제4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2	안 제8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제2항) 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단계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2.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서비스 수준의 설계 및 제공에 관한 사항 3. 지역별 공공교통 현황 및 교통 여건의 전망과 교통수요의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인구구조변화 및 인구감소에 따른 장기적인 교통수요의 예측·관리에 관한 사항 5. 대도시권과 공공교통소외지역의 기본서비스 제공 현황 및 불균형 극복에 관한 사항 6. 공공교통소외지역의 공공교통수단 및 공공교통시설 확보 방안과 다른 교통수단·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7. 공공교통소외지역 기본서비스 수준의 정립·유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교통 영역 설정 및 공공교통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수요 응답형 교통서비스 확대·발전 및 기존 공공교통수단과의 연계, 정량적 시행효과 예측·분석에 관한 사항 10. 기본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운영과 투자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의무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2항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음(제7항)	재량규정
	제9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 지역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 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쳐 시행계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광역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제1항) 그 밖에 시행계획의 내용과 수립·변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재량규정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4	안 제10조 (시행계획의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시행한 실적을 평가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제2항)	재량규정
		시행계획의 실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5항)	의무규정
5	안 제12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원 및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등)	국가는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계획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음(제1항)	재량규정 의무규정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부담하여야 함.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교통소외지역 교통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 반영하고 사업별로 지원규모나 보조비율 등에 차등을 둘 수 있음(제3항)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효과가 미치는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2. 그 밖에 공공교통소외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재량규정
6	안 제13조 (공공교통소외지역 공공교통요금 감면)	공공교통소외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가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그 이용요금은 무료로 함(제1항)	의무규정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면제된 공공교통수단의 운임 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을 부담함(제2항)	의무규정
7	안 제14조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함(제1항)	의무규정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제2항)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 2. 제12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분담 사업비 3.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세입결산분 중 공공교통소외지역계정 분담금 4.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5조의2에 따른 공공교통소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외지역계정에 대한 보조금 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79조제2항에 따른 공공교통소외지역계정에 대한 보조금 6.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기초지원계정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5조에 따른 혼잡통행료,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9. 그 밖에 특별회계로 조성 가능한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특별회계의 수입금은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교통서비스 제공, 공공교통소외지역 공공교통수단 및 시설의 확충과 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	○	• (추계)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추계
2	안 제8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 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3	제9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 지역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	
4	안 제10조 (시행계획의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	○	
5	안 제6조제4항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	×	• (제3호) 공공교통 소외지역 내 공공교통수단 및 공공교통시설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자가자동차를 공공교통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되거나 공공교통 소외지역의 지정, 해당 지역 내 공공교통수단과 공공교통시설에 따라 교통체계 구축·운영 수준이 결정되고, 자가자동차를 공공교통수단으로 활용할지 여부 등이 결정될 것이므로, 현시점에 이와 관련한 재정소요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6	안 제12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원 및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등)	×	• (제3호) 시행계획 내용과 지방자치단체별 공공교통소외지역 교통체계 운영 계획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사업,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원 및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소요분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7	안 제13조 (공공교통소외지역 공공교통요금 감면)	×	• (제3호) 공공교통소외지역 지정, 공공교통소외지역의 65세 이상인 자의 공공교통이용 수요 등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공공교통요금 감면분을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8	안 제14조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 특별회계 설치)	×	• (제3호) 공공교통소외지역지원 특별회계 수입금 규모를 현시점에 예측하기 곤란하고, 제정안에 따른 사업지출 총액 등이 불확정적이어서 추가재정소요를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제정안 부칙과 사업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계대상은 기본서비스 지표 및 기준 설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실적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하여 추정

가.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안 제6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서비스를 측정·설계·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 연구용역 예산의 평균값을 적용할 경우 1억 1,500만원으로 추산됨
 - 유사한 사례인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용역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3] 유사 연구용역 및 예산 사례

(단위: 백만원)

용역명	수요기관	연도	주요내용	예산
광역교통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 연구	국토교통부	2021	(목적) 광역교통서비스 수준의 양적·질적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 (내용) 광역교통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등	130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및 수용성지표 조사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	(목적)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불균형 해소 (내용)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기준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수용성지표 개발 및 적용	100
평균				115

자료: 국토교통부 「광역교통서비스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 연구」 제안 요청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중교통 최소서비스 수준 및 수용성지표 조사」 제안 요청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재작성

- 기본서비스 지표 및 기준 설정 연구용역은 2027년에 1회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서비스를 측정·설계·관리하기 위한 지표 및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2027년 1억 1,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4]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안 제6조)	115	-	-	-	-	115

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 사업비를 적용할 경우 1억 8,600만원으로 추산됨
- 유사사례로서 국토교통부의 「2022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연구용역 예산 1억 8,600만원을 준용
 - 기본계획은 5년 단위임을 고려하고 2027년에 1회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186	-	-	-	-	186

다.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보장 및 공공교통소의 지역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안 제9조)

□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지원계획) 평균사업비를 참고하여 추산함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연 8,600만원으로 가정함
 - －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은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기본계획에 하위계획으로, 평균 8,600만원 소요된 것으로 나타남

[표 6] 유사 연구용역 및 예산

(단위: 백만원)

용역명	수요기관	연도	예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수립용역	경기도	2024	9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용역	경상북도	2024	8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용역	전라북도	2023	8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용역	대전광역시	2023	88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용역	전라남도	2022	5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용역	충청북도	2022	3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용역	세종특별자치도	2022	7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용역	광주광역시	2021	15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용역	울산광역시	2021	10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용역	강원도	2021	5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용역	서울특별시	2021	150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연구용역	경상남도	2021	49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연구용역	부산광역시	2021	119
평균			86

자료: 조달청 나라장터

- 17개 시·도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2027년부터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을 가정
 - － 매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8,600만원 × 17개 시·도 = 14억 6,200만원

- 안 제9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4억 6,200만원 등 향후 5년간 73억 1,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7]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행계획 수립(안 제9조)	1.462	1.462	1.462	1.462	1.462	7,310

라. 시행계획 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안 제10조)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이행 실적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산함
- 국토교통부 내 연단위 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사례로는, 2017년 기준으로 3,000만원이 소요된 ‘혁신도시 지역발전계획 추진실적 평가 매뉴얼 개발 연구’를 참고할 수 있음
 - 제정안에 따른 시행계획 평가는 시행계획이 2027년부터 수립되고 2028년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9년부터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함
 - 매년 시행계획 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 3,000만원 × 17개 시·도 = 510백만원
- 안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시행계획 실적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9년 5억 1,000만원 등 향후 5년간 15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됨

[표 8] 시행계획 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시행계획 평가(안 제10조)	-	-	510	510	510	1,530

4.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기본서비스 지표 및 기준 설정, 기본계획 수립,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실적 평가 등을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7억 6,300만원, 2031년 19억 7,200만원 등 향후 5년간 91억 4,100만원(연평균 18억 2,8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9]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기본적인 교통서비스의 설계 및 제공 (안 제6조)	115	-	-	-	-	115	23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공공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8조)	186	-	-	-	-	186	37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보장 및 공공교통소외 지역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9조)	1,462	1,462	1,462	1,462	1,462	7,310	1,462
시행계획의 실적평가 및 사후관리 (안 제10조)	-	-	510	510	510	1,530	306
합 계	1,763	1,462	1,972	1,972	1,972	9,141	1,828

주: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IV. 부대의견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추계가 곤란한 조문을 제외하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바탕으로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문지은	김신애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문지은	02-6788-4645	mtsophia@assembly.go.kr